

● 제316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·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  
(의안번호 : 457)

2023. 3. 3.

보건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【운영회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번호 457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운영회 의원 외 20명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#### 2. 제안이유

-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, 상위법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(안 제1조의2 신설).

나.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 : 2023. 2. 14.~ 2023. 2. 19.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: 응급의료법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시·도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”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

가.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(안 제1조의2 신설).

#### 1)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이 조례 제1조의2에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“기능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제1조의2(기능)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 <u>1.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</u> <u>2.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</u> <u>3.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</u>

	<p><u>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</u></p> <p><u>4.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</u> <u>의 사용</u></p> <p><u>5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</u></p> <p><u>6.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</u> <u>결과의 활용</u></p> <p><u>7.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</u> <u>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</u></p> <p><u>8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</u>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
--	---

## 2) 검토의견

- 「응급의료법」 제13조의6<sup>1)</sup>에서는 “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”를 두도록 규

- 
- 1) 「응급의료법」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시·도위원회는 해당 시·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  2.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
  3.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
  4.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
  5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
  6.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
  7.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
  8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- ③ ~ ④ <중략>
- ⑤ 시·도위원회 및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정하면서 그 “구성·기능 및 운영 등”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- 따라서 「응급의료법」에서 위임한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의 “기능 및 운영”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, 그 “기능”의 경우,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.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도 각종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는<sup>2)</sup> 조례나 규칙 등에 “설치목적·기능 및 성격”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<sup>3)</sup>.

- 또한,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목적, 기능 및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<sup>4)</sup>.

- 자문기관인 위원회규정에서 규정되고 있는 조항들은 1) 설치 근거(목적), 2) 위원회의 기능, 3) 위원회의 구성, 4) 임기, 5) 위원장의 직무, 6) 회의, 7)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,

---

2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위원회의 설치절차 등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.

1. 설치 목적·기능 및 성격
2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3. 존속 기한(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
4.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(시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가·허가,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5. 회의의 소집 시기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6.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
7.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4) 자료: 법체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(2022. 8.)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. p217.

8) 전문위원, 9) 간사, 10) 실무위원회, 11) 관계기관 등에 의 협조요청, 12) 공청회 등의 개최, 13) 수당, 14) 운영세칙 등을 두고 있음<sup>5)</sup>).

- 이에, 위원회의 설치근거(목적) 다음에 “기능”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한 규정 방식으로 보여지며, 위원회 “기능”이 조례에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됨.

나.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.

### 1)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“회의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.</p> <p>1. 정기회의: 매년 2회</p> <p>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</p>

5) 자료: 박영욱(2013. 2.)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. p47

② (생략)	고 인정하는 경우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2) 검토의견

- 「응급의료법」 제13조의6(에서는6)에서는 “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”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“매년 2회 이상 개최”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.

### ※ 집행기관 의견(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)

- 상위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동의함.

## 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”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, 위원회 “기능”이 조례에 명확

6) 「응급의료법」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~ ③<중략>

④ 시·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⑤ <생략>.



히 드리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.

문 의 처
-------

우현재 입법조사관 (02-2180-8155)
--------------------------